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12호 2016. 10. 17(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14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중3-70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146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341호 석남체육공원 편입토지 손실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353호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1360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23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44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3-70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5호(2016. 1. 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 시설【도로 : 중3-701호선, 사업명 : 심곡동 심곡로 188번길(중3-701호선) 도로 확장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4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701호선)
  - 명칭 : 심곡동 심곡로 188번길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L=293m, B=8~12m, A=3,233m<sup>2</sup>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701	8~12	국지 도로	293	공촌동 275-6	중로2-39	일반 도로	공촌동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701	8~12	국지 도로	293	공촌동 275-6	중로2-39	일반 도로	공촌동		

## ■ 용 지 조 서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소 유 자		구분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42-7	임	71	2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국유지	
2		산142-5	임	409	65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국유지	
3		산142-6	임	617	140	김옥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00-21	사유지	전체 편입
4		산141-7	임	468	38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국유지	
5		산141-3	임	2,858	383	국(산림청)	산림청	국유지	전체 편입
6		278-7	전	343	25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국유지	
7		278-1	전	358	266	국(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유지	전체 편입
8		278-3	전	208	3	국(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유지	전체 편입
9		산141-6	임	375	34	국(산림청)	산림청	국유지	
10		산141-9	임	27	1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국유지	전체편 입
11		산140-7	임	27	10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국유지	전체편 입
소 계				7,177	967				

## ■ 지 장 물 조 서

### 1. 체신주

번호	소재지	지번	위치	방향	체신주번호	소관청	비고
1	서구 공촌동	산141-3임	0+75.3	우		한국통신공사	
2	"	278-1전	0+159.2	우		"	

### 2. 한전주

번호	소재지	지번	위치(STA.)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서구공촌동	산141-3임	0+75.3	우		한국전력	
2	"	278-1전	0+159.2	우		"	

### 3. 수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수종	수량	규격	비고
1	서구 공촌동	산142-6	임	소나무	1	H:2.0m, B=0.15m	관상수
2	서구 공촌동	산141-3	임	소나무	10	H:2.0m, B=0.15m	관상수
3	서구 공촌동	278-1	전	소나무	1	H:2.0m, B=0.15m	관상수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4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0.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송학로434번길 26 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0. 1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10-1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6-1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434번길 26 (검암동)	2009-09-22	송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370-2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69 (검암동, 검암역(인천2호선))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72-1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492 (검암동, 검바위역(인천2호선))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8-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29번길 3-11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45-2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407 (경서동)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징명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징명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경명>명칭에서 부여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165-1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 23 (경서동)	2009-09-22	경서지구를 관통하여 경서지구의 지명을 따 경서로로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8-13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15-1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06-2	인천광역시 서구 청중로478번안길 4 (가정동)	2012-10-25	청중로47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5-9, 515-1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61번길 16 (석남동, DH서티)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17-7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4-1 (석남동, 서부여성회관역(인천2호선))	2009-07-06	옛 건지촌 뒷산의 원 이름인 서달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56-1, 156-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44-5 (원창동, 믿음모터스)	2009-09-22	원창동의 동명을 따 원창동은 조선시대에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해안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임	
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40-1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84번길 34-3 (가좌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로115번길 2-8 (마전동, 미르팰리스)	2008-12-31	마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73-32, 273-4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68번길 63-16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73-3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68번길 63-15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0-13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5로 29-6 (오류동, (주)큐테크)	2012-10-25	보듬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0-9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5로 29-8 (오류동)	2012-10-25	보듬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7-1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2로 6 (오류동, 금인테크)	2012-10-25	도담로에서 두번째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50-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187 (오류동, 검단오류역(검단산업단지-인천2호선))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474-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323 (왕길동, 왕길역(인천2호선))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46호

##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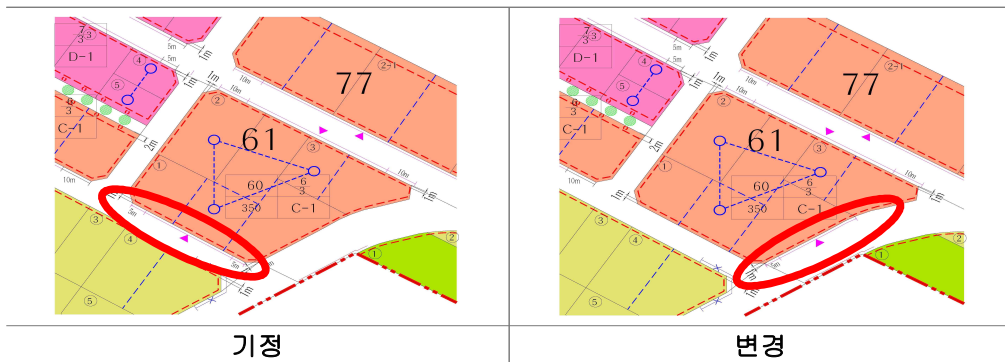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교통처리계획 : 차량 진출입로 위치변경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계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341호

## 석남체육공원 편입토지 손실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석남체육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계획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서류를 송달할 수가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시행지	사업규모(m <sup>2</sup> )	사업시행자
석남체육공원 조성공사	2016년 ~2018년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	10,20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공고기간 : 2016. 10. 17(월) ~ 10. 31(월)

### 3.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추후 개별통지
-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대면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 보상금 산정방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관련임.]

## 4.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	편입 토지내역					비고
		동명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유○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차남4길 ○1	서구 석남동	산6-8	임야	28,349	6,468	-분할측량예정 -지분34380/103140

## 5.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함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343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

- 근거법령인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2016. 8. 12.자 제정·시행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행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하위조례 정비

- 조례의 근거법령 정비(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 명확화
-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상위법령에 따른 정비
- 제4조 위원회 기능 정비
- 위원장 선출방법 개정(호선⇒구청장 지명)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032-560-4736, FAX 032-560-2769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무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과장, 서무는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무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li> <li>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li> <li>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li> <li>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li> <li>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li> </ol>
------	--

[별지 제2호서식]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				
조정의결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의 결 통 지 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 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00:00)			
출석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소관 부서명 〉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	
연 락 처	(032) 560 - 4736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3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주변(회화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과 관련하여 각종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회화나무주변(회화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과 관련하여 각종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10. 13 ~ 2016. 11. 01(20일간)

## 5. 설치장소

연 번	카메라 명칭	지번주소	비 고
1	신현북초등학교 앞	신현동 85-4	방범CCTV
2	GNB어학원뒷길	신현동 124-1	방범CCTV
3	헤리미용실앞	신현동 243-10	방범CCTV
4	귀빈빌라앞	신현동 84-4	방범CCTV
5	점보빌라사거리	신현동 158-6	방범CCTV
6	세븐일레븐앞사거리	신현동 162-1	방범CCTV
7	세오개로54번길안쪽	신현동 244-23	방범CCTV
8	한길교회 앞	신현동 157-17	방범CCTV
9	예일빌리지 앞	신현동 156-9	방범CCTV
10	신현유통공터 앞	신현동 155-9	방범CCTV

## 6. 의견제출

○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6. 11.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재생경관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범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49)

라. 우 편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032-560-476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360호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연희공원 조성사업 (GB훼손지 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연희공원 조성사업(GB훼손지 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10.17. ~ 2016.10.31.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49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 의 표시
  - 인천 서구 연희동 산148-10번지, 산148-15번지, 432-11번지 일원 지장물 260건
  - 소유자 : 김○길(인천 서구 연희동 108-00) 외 4명
6. 열람내용 : 재결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인정 관계서류,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경위서, 감정평가서 사본, 기타 관계서류 등
7. 기 타 :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5)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044-201-5308), 인천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